

예 산 총 칙

2022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83,292,872	20,498,786
일반회계		613,847,327	18,415,420
특별회계		69,445,545	2,083,366
	공기업특별회계	59,739,176	1,792,175
	상수도공기업	32,677,008	980,310
	하수도공기업	27,062,168	811,865
	기타특별회계	9,706,369	291,191
	의료급여기금운영	1,019,977	30,599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673,840	20,215
	농공지구조성사업	4,999,634	149,98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66,610	4,998
	수질개선	511,023	15,331
	주택사업	1,947,324	58,420
	기반시설	21,513	645
	장기미집행	366,448	10,99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800,754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3,900,000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